

圖書館法改正案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법은 圖書館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여 圖書館의 健全한 發展을 도모함으로써 國民의 教育과 傳統文化의 繼承 發展에 寄與하고 社會各分野의 情報流通을 効率化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① 이 법에서 “圖書館”이라함은 圖書館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公衆 또는 特定人의 利用에 提供하며 教養, 學習, 調查研究 및 情報入手에 도움을 주는 일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圖書館資料”(이하 資料로 稱한다)라 함은 圖書, 記錄, 小冊子, 連續刊行物, 樂譜, 地圖 등 各種 印刷資料와 映畫 필름, 슬라이드, 音盤, 마이크로폼 資料, 테이프 등 視聽覺資料와 行政資料 및 鄉土資料 등을 말한다.

第3條(圖書館의 種類) ① 圖書館은 그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 公立圖書館, 私立圖書館으로 區分하고 그 設立目的에 따라 國立中央圖書館,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 學校圖書館, 特殊圖書館으로 區分한다.

② 前項의 國立中央圖書館이라 함은 國家代表圖書館으로 全國民을 對象으로 그 平生教育과 文化發展에 이바지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③ 第1項의 “公共圖書館”이라함은 地域住民을 對象으로 그 平生教育과 文化發展에 이바지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④ 第1項의 “大學圖書館”이라함은 大學, 師範大學, 教育大學, 專門大學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 學校에서 學生 및 教授의 教育 및 研究를 支援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⑤ 第1項의 “學校圖書館”이라함은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와 이들에 準하는 各種 學校에서 學生 및 敎員에게 도움을 주는 圖書館을 말한다.

⑥ 第1項의 “特殊圖書館”이라함은 政府機關, 公共機關이나 團體 등이 각기 그 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構成員 또는 研究者를 對象으로 教養, 調查 및 研究에 도움을 주는 圖書館을 말한다.

第4條(特殊圖書館에 대한 適用排除) 特殊圖書館과 그 設立者에 대하여는 이 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5條(圖書館의 職員, 施設, 資料 및 運營) ① 圖書館은 그 目的을 達成하는데 必要한 施設 및 資料를 갖추어야 하며 司書職員과 기타 必要한 職員을 두어야 한다.

② 圖書館은 그 環境과 施設이 利用者에게 快適하고 便利하도록 維持되어야 한다.

③ 圖書館은 그 設立目的에 違背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一般에게 公開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6條(司書職員의 資格 및 養成) ① 圖書館 司書職員은 專門司書, 正司書, 准司書 및 司書敎師로 區分하며 別表의 資格基準에 該當하는 者로서 教育法 및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文敎部長官이 수여하는 資格證을 받아야 한다.

② 前項의 司書職員의 養成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7條(司書職員의 配置) 第3條의 各種 圖書館에는 司書職員, 司書敎師 및 기타 必要한 職員을 두어야 하며 館長과 副館長은 專門司書로 補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8條(圖書館發展委員會) ① 全 圖書館의 均衡있는 發展과 圖書館機能의 效率을 높이기 위하여 圖書館發展委員會를 둔다.

② 前項의 圖書館發展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9條(資料의 納本) ① 國家機關이 資料를 發行할 때에는 그 發行日로부터 30日 以內에 그 3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納本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가 資料를 發行한 때에는 그 發行日로부터 30日 以內에 그 3部를 國立中央圖書館과 그가 設立한 公共圖書館에 各各 納本하여야 한다.

③ 出版社 또는 前①②項 以外의 者가 資料를 發行한 때에는 그 發行日로부터 30日 以內에 그 資料의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納本하여야 한다.

④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의 納本을 한 者가 그 資料에 대한 實費補償을 請求할 때에는 國立中央圖書館은 그 實費를 補償하여야 한다.

第10條(圖書館協會) ① 圖書館設立者 또는 司書職員은 圖書館相互間의 資料交換 運營管理에 대한 研究 또는 國際圖書館 團體와의 協助 및 기타 事項에 關한 協助와 全體 圖書館人의 社會的, 經濟的 地位向上을 위하여 圖書館協會를 組織할 수 있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範圍內에서 圖書館協會에 대하여 補助를 할 수 있다.

第2章 國立中央圖書館

第11條(設置) ① 文敎部長官 所屬下에 國立中央圖書館을 둔다.

② 國立中央圖書館의 業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分館을 둘 수 있다.

第12條(機能) 國立中央圖書館은 民族文化의 繼承發展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管掌한다.

1. 國內外 資料의 蒐集, 整理, 保存 및 利用
2. 國家書誌의 作成 및 書誌標準化 管理
3. 資料의 國際交流 및 圖書館活動의 國際協力
4. 圖書館學에 대한 調查 및 研究
5. 他圖書館에 대한 指導, 援助와 協力網의 統轄
6. 司書職의 研修
7. 기타 國家代表 圖書館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

第13條(資料蒐集上의 特例) ① 國立中央圖書館은 資料의 原形保存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出版物의 檢閱에 관한 特別한 措置를 關係部處의 長에게 要求할 수 있다.

② 國立中央圖書館長은 第9條에 의한 納本의 實効를 거두기 위하여 關係部處의 長에게 必要한 措置를 要求할 수 있다.

第3章 公共圖書館

第14條(設置)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域住民의 平生敎育 및 文化發展을 위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置 育成하여야 한다.

② 民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은 公共圖書館을 設置할 수 있다.

③ 前項의 私立의 公共圖書館을 設置함에 있어서는 監督廳의 認可를 얻어야 하며 그 申請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公共圖書館에는 어린이部를 두어야 하며 地域의 事情에 따라 分館 또는 移動 文庫를 둘 수 있다.

第15條(機能) 公共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活動을 通하여 公衆에 奉仕함으로써 地域 住民의 平生敎育 및 文化發展에 이바지 한다.

1. 資料의 蒐集, 整理, 保存 및 利用
2. 讀書會, 研究會, 讌賞會, 展示會, 기타 文化行事의 主催 및 獎勵

3. 公衆의 生活과 地方行政에 必要한 情報提供
 4. 다른 圖書館과의 資料 및 文獻情報의 相互交流
 5. 圖書館業務에 관한 調查 및 研究
 6. 기타 公共圖書館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
- 第16條(基準) 公共圖書館의 職員, 施設, 資料, 奉仕活動 및 기타 必要한 基準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7條(監督廳) 公共圖書館은 教育委員會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第18條(國家補助) ① 國家는 公共圖書館 設立者에 대하여 圖書館의 設置 및 運營에 必要한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補助金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9條(同一名稱 使用禁止)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圖書館이라는 名稱을 使用할 수 없다.

第4章 大學圖書館

第20條(設置) 大學, 師範大學, 教育大學, 專門大學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 學校에 는 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

第21條(機能) 大學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活動을 통하여 大學教育의 目的達成에 이바지 한다.

1. 教育 및 研究에 必要한 資料의 蒐集, 整理, 保存 및 利用
2. 讀書會, 鑑賞會, 展示會 등의 主催
3. 다른 圖書館과의 資料 및 文獻情報의 相互交流
4. 圖書館 業務에 관한 調查 및 研究
5. 기타 大學圖書館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

第22條(基準) 大學圖書館의 職員, 施設, 資料 및 기타 必要한 基準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3條(國家補助) ① 國家는 大學圖書館의 設置 및 運營에 必要한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補助金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5章 學校圖書館

第24條(設置)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와 이에 準하는 各種 學校에는 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

第25條(機能) 學校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活動을 通하여 學校教育의 目的達成에 이
바지 한다.

1. 學校教育에 必要한 資料와 教材의 蒐集, 整理, 保存 및 利用
2. 讀書會, 鑑賞會, 展示會 등의 主催
3. 教育媒體의 開發과 製作 및 利用과 奉仕
4. 讀書指導 및 圖書館利用指導
5. 기타 學校教育 目的達成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第26條(職員) 學校圖書館에는 司書教師와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職員을 두어야 한
다.

第27條(基準) 學校圖書館의 職員, 施設, 資料 및 기타 必要한 基準에 關하여는 大
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8條(補助)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學校圖書館 設置 및 運營에 必要한 經
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補助金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9條(一般의 利用에의 提供) 學校圖書館은 그 目的達成에 支障이 없는 한 公衆
의 利用에 提供할 수 있다.

第 6 章 特殊圖書館

第30條(設置)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民法 및 기타 法律에 規定된 法人은 各各
法令 條例 또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을 둘 수 있다.

第31條(機能) 特殊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活動을 通하여 設置 目的達成에 이바지
한다.

1. 設立目的에 必要한 資料의 蒐集, 整理, 保存 및 利用
2. 利用者들의 要求에 부응할 各種 資料를 蒐集하여 그 索引 및 抄錄의 作成 및
提供
3. 다른 圖書館과의 資料 및 文獻의 相互交流
4. 기타 設置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

第 7 章 圖書館協力網

第32條(定義) 이 法에서 “圖書館協力網”이라 함은 圖書館奉仕業務의 效率을 높이

기 위한 全國 各種 圖書館의 相互協力을 圖謀하는 組織體系를 말한다.

第33條(機能) 圖書館協力網은 다음 各號의 機能을 통하여 圖書館 相互間의 奉仕 效率化에 寄與한다.

1. 分擔收書 制度의 實施
2. 相互貸借 制度의 實施
3. 參考業務網의 運營
4. 圖書館 業務處理 技術에 관한 指導 및 協力
5. 기타 奉仕業務 改善을 위하여 必要한 指導 및 協力

第34條(支援) 各種 圖書館의 設立者는 圖書館協力網을 통한 圖書館活動을 支援하여야 한다.

第35條(中央館) 國立中央圖書館은 圖書館協力網의 “中央館”이 된다.

第36條(中央館의 機能) 中央館은 다음 事項을 管掌한다.

1. 圖書館協力網의 各級 “代表館”의 指定 또는 變更
2. 圖書館協力網의 運營 및 統轄
3. 圖書館協力網의 指導, 援助 및 奉仕活動調整
4. 其他 必要한 事項

第37條(地域代表館) ① 特別市, 直轄市 및 道에 1個館의 “地域代表館”을 둔다.

② 前項의 地域代表館은 그 地域圖書館에 대하여 協力網의 運營을 統轄한다.

第38條(組織 및 運營) 圖書館協力網의 組織 및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8章 罰 則

第39條(罰金) 第14條 第3項, 第17條 및 第19條의 規定을 違反한 者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40條(過怠料) 第9條 第3項의 規定을 遊反한 者는 當該 資料 定價의 10倍에 相當하는 過怠料에 處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後 30日이 經過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現存하는 圖書館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다만, 私立의 公共圖書館은 이 法 施行日로 부터 2月以內에 監督廳에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附 則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別表〉 圖書館 司書職員の 資格基準

<p>專門司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正司書 資格者로서 碩士學位 以上の 學位를 取得한 者 2. 學士學位 以上の 學位를 所持하고 正司書 資格證을 取得한 者로서 5年以上의 圖書館 實務經歷을 가지고 文教部長官이 指定하는 教育機關에서 所定の 再教育을 받은 者
<p>正 司 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大學의 圖書館學科를 卒業한 者 2. 大學卒業者 또는 同等以上の 學歷이 있는 者로서 文教部長官이 指定하는 教育機關에서 圖書館學 敎科目을 30學點以上 履修한 者 3. 准司書로서 司書業務에 5年以上 從事한 經歷이 있는 者로서 文教部長官이 指定하는 教育機關에서 圖書館學 敎科目을 30學點 以上 履修한 者 4. 大學에서 圖書館學 敎科目을 30學點 以上 履修한 者
<p>准 司 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專門大學圖書館科를 卒業한 者 2. 大學 또는 教育大學에서 圖書館學을 副專攻한 者
<p>司書敎師</p>	<p>教育法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p>

新·舊 條文 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p>道1章 總 則</p>	<p>第1章 總 則</p>
<p>第1條(目的) 이 법은 圖書館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여 圖書館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함으로써 國民의 教育과 文化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1條(目的) 이 법은 圖書館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여 圖書館의 健全한 發展을 도모함으로써 國民의 教育과 傳統文化의 繼承 發展에 寄與하고 社會各分野의 情報流通을 效率化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定義) 이 법에서 “圖書館”이라 함은 圖書, 記錄, 視聽覺資料, 國家 및 地方行政資料, 鄉土資料 및 기타 必要한 資料(이하 “圖書館資料”라 한다)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公衆 또는 特定人의 利用에 供하게 하여 그 調査, 研究, 學習, 敎養, 레크리에이션 其他 社會教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p>	<p>第2條(定義) ① 이 법에서 “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公衆 또는 特定人의 利用에 提供하여 敎養, 學習, 調査研究 및 情報入手에 도움을 주는 일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圖書館資料”(이하 資料로 稱한다)라 함은 圖書, 記錄, 小冊子, 連續刊行物, 樂譜, 地圖 등 各種 印刷資料와 映畫필름, 슬라이드, 音盤, 마이크로폼 資料, 테이프 등 視聽覺資料와 行政資料 및 鄉土 資料 등을 말한다.</p>
<p>第3條(圖書館의 種類) ① 圖書館은 그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 公立圖書館, 私立圖書館으로 區分하고 그 設立目的에 따라 公共圖書館, 學校圖書館, 特殊圖書館으로 區分한다.</p>	<p>第3條(圖書館의 種類) ① 圖書館은 그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 公立圖書館, 私立圖書館으로 區分하고 그 設立目的에 따라 國立中央圖書館,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 學校圖書館, 特殊圖書館으로 區分한다.</p>
<p>(新設) ② 前項에서 “公共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公衆의 敎養과 調査, 研究 및 레크</p>	<p>② 前項의 國立中央圖書館이라 함은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 全國民을 對象으로 그 平生教育과 文化發展에 이바지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③ 第1項의 “公共圖書館”이라 함은 地域住民을 對象으로 그 平生教育과 文化發展에 이바지하는 圖書館을 말</p>

現 行	改 正 案
<p>리에이손 등 그 利用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 (新設)</p> <p>③ 第 1 項에서 “學校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 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學生 및 敎員의 學習, 敎養, 調查 研究 및 레크리에이손 그 利用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學校의 施設을 말한다.</p> <p>④ 第 1 項에서 “特殊圖書館”이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기타 法人 또는 團體가 圖書館 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그 所屬員의 敎養과 調查, 研究 및 레크리에이손 등 그 利用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p> <p>第 4 條(特殊圖書館에 대한 適用排除) 特殊圖書館과 그 設立者에 대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p> <p>第 5 條(圖書館施設) ① 圖書館은 그 目的을 達成함에 必要한 建物, 圖書館資料, 閱覽施設 및 기타의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公共圖書館은 그 環境과 施設이 利用에 便利하고 保健, 衛生 또는 管理에 適合하여야 한다.</p> <p>③ 公共圖書館의 施設基準은 閣令으로 定한다. (新設)</p>	<p>한다.</p> <p>④ 第 1 項의 “大學圖書館”이라함은 大學, 師範大學, 敎育大學, 專門大學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 學校에서 學生 및 敎授의 敎育 및 研究를 支援하는 圖書館을 말한다.</p> <p>⑤ 第 1 項의 “學校圖書館”이라함은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와 이들에 準하는 各種 學校에서 學生 및 敎員에게 도움을 주는 圖書館을 말한다.</p> <p>⑥ 第 1 項의 “特殊圖書館”이라함은 政府機關, 公共機關이나 團體 등이 각기 그 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構成員 또는 研究者를 對象으로 敎養, 調查 및 研究에 도움을 주는 圖書館을 말한다.</p> <p>第 4 條(現行法 第 4 條와 同一)</p> <p>第 5 條(圖書館의 職員, 施設, 資料 및 運營) ① 圖書館은 그 目的을 達成하는데 必要한 施設 및 資料를 갖추어야 하며 司書職員과 기타 必要한 職員을 두어야 한다.</p> <p>② 圖書館은 그 環境과 施設이 利用者에게 快適하고 便利하도록 維持되어야 한다.</p> <p>③ 圖書館은 그 設立目的에 違背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一般에게 公開함을 原則으로 한다.</p> <p>第 6 條(司書職員의 資格 및 養成) ① 圖</p>

現 行	改 正 案
<p>第6條(司書職員の 配置) ① 公共圖書館과 學校圖書館에는 閣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資料 및 運營에 關한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를 두어야 한다.</p> <p>②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의 資格과 養成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p> <p>(新設)</p> <p>第7條(國家 등에 대한 公共圖書館 設置의 勸獎)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衆의 社會敎育 및 文化的 向上을 爲하여 豫算의 範圍안에서 公共圖書館의 設置, 育成에 努力하여야 한다.</p> <p>第8條(圖書館의 使用料) 公共圖書館은 그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p> <p>第9條(監督廳)</p> <p>第10條(停館命令) 監督廳은 公共圖書館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設立者에 대하여 停館을 命할 수 있다.</p>	<p>書館司書職員은 專門司書, 正司書, 准司書 및 司書敎師로 區分하며 別表의 資格基準에 該當하는 者로서 敎育法 및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文敎部長官이 수여하는 資格證을 받아야 한다.</p> <p>② 前項의 司書職員의 養成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7條(司書職員の 配置) 第3條의 各種 圖書館에는 司書職員, 司書敎師 및 기타 必要한 職員을 두어야 하며 館長과 副館長은 專門司書로 補함을 原則으로 한다.</p> <p>第8條(圖書館發展委員會) ① 全國圖書館의 均衡있는 發展과 圖書館機能의 效率을 높이기 위하여 圖書館發展委員會를 둔다.</p> <p>② 前項의 圖書館發展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削除) (第14條參照)</p> <p>(削除)</p> <p>(調整案 第17條로)</p> <p>(削除)</p>

現 行	改 正 案
<p>1. 美風良俗을 현저하게害하는 行爲가 있을 때</p> <p>2. 第5條 第3項에 規定된 施設基準을 維持하지 못한 때</p> <p>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여 停館의 方法 以外로는 이를 監督할 수 없을 때</p>	
<p>第11條(廢館申告) 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當該 圖書館을 廢館한 때에는 그 事由와 圖書에 관한 措置狀況을 밝혀 監督官廳에 廢館申告를 하여야 한다.</p>	<p>(削除)</p>
<p>第12條(圖書館資料의 提供과 納本) ① 國家機關이 官報, 圖書, 기타 刊行物을 發刊할 때에는 그 3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提供하여야 한다.</p> <p>② 地方自治團體가 公報, 圖書, 기타 刊行物을 發行한 때에는 그 3部를 國立中央圖書館과 그가 設立한 公共圖書館에 各各 提供하여야 한다.</p> <p>③ 出版社 또는 前2項 이외의 者가 圖書 기타 刊行物을 發刊할 때에는 그 發行日로부터 30日 이내에 그 刊行物의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納本하여야 한다.</p> <p>④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刊行物의 納本을 한 者가 그 刊行物에 대한 實費補償을 請求할 때에는 國立中央圖書館은 그 實費를 補償하여야 한다.</p>	<p>第9條(資料의 納本) ① 國家機關이 資料를 發行할 때에는 그 發行日로부터 30日 以內에 그 3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納本하여야 한다.</p> <p>② 地方自治團體가 資料를 發行한 때에는 그 發行日로부터 30日 以內에 그 3部를 國立中央圖書館과 그가 設立한 公共圖書館에 各各 納本하여야 한다.</p> <p>③ 出版社 또는 前①②項 以外의 者가 資料를 發行한 때에는 그 發行日로부터 30日 以內에 그 資料의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納本하여야 한다.</p> <p>④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의 納本을 한 者가 그 資料에 대한 實費補償을 請求할 때에는 國立中央圖書館은 그 實費를 補償하여야 한다.</p>
<p>第13條(圖書館協會) ① 圖書館의 設立者는 圖書館 相互間의 資料交換, 運營管理에 대한 研究 또는 國際圖書館團體와의 協助 및 기타 事項에 관한 協助와 全體圖書館人의 社會的 經濟的地位向上을 위하여 圖書館協會를 組織할 수 있다.</p>	<p>第10條(圖書館協會) ① 圖書館設立者 또는 司書職員은 圖書館 相互間의 資料交換 運營管理에 대한 研究 또는 國際圖書館團體와의 協助 및 기타 事項에 관한 協助와 全體圖書館人의 社會的 經濟的地位向上을 위하여 圖書館協會를 組織할 수 있다.</p>

現 行	改 正 案
<p>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圖書館協會에 대하여 補助를 할 수 있다.</p>	<p>② 左同</p>
<p>第 2 章 公共圖書館</p>	<p>(調整案 第 3 章으로)</p>
<p>第 1 節 總 則</p>	<p>(削除)</p>
<p>第14條(設立者)</p>	<p>(調整案 第14條로)</p>
<p>第15條(公共圖書館의 機能)</p>	<p>(調整案 第15條로)</p>
<p>第 2 節 國立中央圖書館</p>	<p>第 2 章 國立中央圖書館</p>
<p>第16條(設置) ① 文教部長官 所屬下에 國立中央圖書館을 둔다.</p>	<p>第11條(設置) ① 左同</p>
<p>② 國立中央圖書館의 業務를 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分館을 들 수 있다.</p>	<p>② 左同</p>
<p>第17條(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 國立中央圖書館은 第15條에 規定한 事項外에 다음의 事項을 管掌한다.</p>	<p>第12條(機能) 國立中央圖書館은 民族文化의 繼承發展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管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國家에 관한 文獻의 蒐集 및 保存 2. 國內外書誌의 作成 및 그 紹介 3. 圖書館資料의 國際交流 4. 圖書館學에 대한 調查 研究 5. 他圖書館에 대하여 圖書館業務에 관한 指導 및 援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國內外 資料의 蒐集, 整理, 保存 및 利用 2. 國家書誌의 作成 및 書誌標準化 管理 3. 資料의 國際交流 및 圖書館活動의 國際協力 4. 圖書館學에 대한 調查 및 研究 5. 他圖書館에 대한 指導, 援助와 協力網의 統轄 6. 司書職의 研修 7. 기타 國家代表 圖書館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
<p>(新設)</p>	<p>第13條(資料蒐集上의 特例) ① 國立中央圖書館은 資料의 原形保存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出版物의 檢閱에 관한 特別한 措置를 關係部處의 長에게 要求할 수 있다.</p>
<p>(新設)</p>	<p>② 國立中央圖書館長은 第 9 條에 의한 納本의 實效를 거두기 위하여 關係</p>
<p>(新設)</p>	

現 行	改 正 案
<p>第14條(設立者) 公共圖書館은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만이 設立할 수 있다.</p>	<p>部處의 長에게 必要한 措置를 要求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 8 章 公共圖書館</p> <p>〈削除〉(第14條 第 2 項 參照)</p>
<p style="text-align: center;">第 3 節 公立의 公共圖書館</p>	<p>〈削除〉</p>
<p>第18條(公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置) ① 各級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과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定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置할 수 있다.</p>	<p>道14條(設置)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域住民의 平生教育 및 文化發展을 위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置 育成하여야 한다.</p>
<p>(新設)</p>	<p>② 民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은 公共圖書館을 設置할 수 있다.</p>
<p>(新設)</p> <p>② 前項의 公共圖書館에는 어린이部를 두어야 하며 地域의事情에 따라 分館 또는 移動文庫를 둘 수 있다.</p>	<p>③ 前項의 私立의 公共圖書館을 設置함에 있어서는 監督廳의 認可를 얻어야 하며 그 申請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19條(補助)</p> <p style="text-align: center;">第 4 節 私立의 公共圖書館</p>	<p>④ 公共圖書館에는 어린이部를 두어야 하며 地域의事情에 따라 分館 또는 移動文庫를 둘 수 있다.</p> <p>(調整案 第18條로)</p>
<p>第20條(私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置) 私立의 公共圖書館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第 5 條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고 閣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監督廳에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p>	<p>(削除)</p> <p>(削除)</p>
<p>第15條(公共圖書館의 機能) 公共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活動을 통하여 公衆에 奉仕한다.</p> <p>1. 圖書館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公衆의 利用에 供하고 그 相議에 응</p>	<p>第15條(機能) 公共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活動을 통하여 公衆에 奉仕함으로써 地域住民의 平生教育 및 文化發展에 이바지한다.</p> <p>1. 資料의 蒐集, 整理, 保存 및 利用</p>

現 行	改 正 案
<p>하는 일</p> <p>2. 讀書會, 研究會, 鑑賞會, 展示會 기타 行事を 主催하거나 獎勵하는 일 (新設)</p> <p>3. 다른 公共圖書館 또는 學校圖書館 이나 特殊圖書館과 協助하여 圖書館 資料를 相互交流하는 일</p> <p>4. 圖書館業務에 關하여 調查研究하는 일</p> <p>5. 기타 圖書館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일 (新設)</p> <p>第9條(監督廳) ① 私立의 公共圖書館은 第1次로 市郡教育長(서울特別市·釜山市教育委員會를 包含한다) 第2次로 道教育委員會, 第3次로 文教部長官의 指導, 監督을 받는다.</p> <p>② 學校圖書館은 教育法과 私立學校法에 規定된 當該學校의 監督廳의 指導, 監督을 받는다.</p> <p>第19條(補助) 國家는 公共圖書館을 設置運營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豫算의 範圍안에서 當該 圖書館의 施設과 設備에 要하는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新設)</p> <p>第21條(私立의 公共圖書館에 대한 補助) ①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私立의 公共圖書館으로서 閣令이 定하는 司書職員을 두는 境遇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그 設立者에 대하여 經費의 一部</p>	<p>2. 讀書會, 研究會, 鑑賞會, 展示會 기타 文化行事의 主催 및 獎勵</p> <p>3. 公衆의 生活과 地方行政에 必要한 情報提供</p> <p>4. 다른 圖書館과의 資料 및 文獻情報의 相互交流</p> <p>5. 圖書館業務에 關한 調查 및 研究</p> <p>6. 기타 公共圖書館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p> <p>第16條(基準) 公共圖書館의 職員, 施設, 資料, 奉仕活動 및 기타 必要한 基準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17條(監督廳) 公共圖書館은 教育委員會의 指導監督을 받는다,</p> <p>第18條(國家補助) ① 國家는 公共圖書館 設立者에 대하여 圖書館의 設置 및 運營에 必要한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p> <p>② 前項의 補助金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削除)</p>

現 行	改 正 案
<p>를 補助할 수 있다.</p> <p>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를 받은 私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立者에 대하여 特別한 指導, 監督을 할 수 있다.</p>	
<p>第22條(指導·助言 및 是正命令)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私立의 公共圖書館에 대하여 그에 運營에 관하여 專門的인 指導와 助言을 할 수 있다.</p> <p>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私立의 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그 施設 또는 運營 기타에 관하여 法令의 規定을 違反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是正을 命할 수 있다.</p>	<p>(削除)</p>
<p>第23條(報告) 監督廳은 私立의 公共圖書館으로부터 必要한 報告를 받을 수 있다.</p>	<p>(削除)</p>
<p>第24條(圖書館의 同種의 施設) 누구든지 圖書館과 同種의 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다만,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는 圖書館이라는 名稱은 使用할 수 없다.</p>	<p>第19條(同一名稱使用禁止)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圖書館이라는 名稱을 使用할 수 없다.</p>
<p>(新設)</p>	<p>第 4 章 大學圖書館</p>
<p>(新設)</p>	<p>第20條(設置) 大學, 師範大學, 教育大學, 專門大學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 學校에는 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p>
<p>(新設)</p>	<p>第21條(機能) 大學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活動을 통하여 大學教育의 目的達成에 이바지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教育 및 研究에 必要한 資料의 蒐集, 整理, 保存 및 利用 2. 讀書會, 鑑賞會, 展示會 등의 主權 3. 다른 圖書館과의 資料 및 文獻情報의 相互交流 4. 圖書館業務에 관한 調查 및 研究

現 行	改 正 案
<p>(新設)</p> <p>(新設)</p> <p style="text-align: center;">第 3 章 學校圖書館</p> <p>第25條(設置) ①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는 圖書室 또는 圖書館을 實業高等專門學校, 初級大學, 大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에는 圖書館을 두어야 한다.</p> <p>②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閣令으로 定한다.</p> <p>(新設)</p> <p>第26條(職員) 學校圖書館의 職務를 擔當할 職員으로서 實業高等專門學校, 初級大學, 大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에는 司書職員을 두어야 하며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는 각각 司書教師 또는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p>	<p>5. 기타 大學圖書館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p> <p>第22條(基準) 大學圖書館의 職員, 施設, 資料 및 기타 必要한 基準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23條(國家補助) ① 國家는 大學圖書館의 設置 및 運營에 必要한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p> <p>② 前項의 補助金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 5 章 學校圖書館</p> <p>第24條(設置)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와 이에 準하는 各種 學校에는 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p> <p>(削除) (調整案 第26條 參照)</p> <p>第25條(機能) 學校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活動을 통하여 學校教育의 目的達成에 이바지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學校教育에 必要한 資料와 教材의 蒐集, 整理, 保存 및 利用 2. 讀書會, 鑑賞會, 展示會 등의 主催 3. 教育謀體의 開發과 製作 및 利用과 奉仕 4. 讀書指導 및 圖書館利用指導 5. 기타 學校教育 目的達成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p>第26條(職員) 學校圖書館에는 司書教師와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職員을 두어야 한다.</p>

現 行	改 正 案
<p>教師를 두어야 한다. (新設)</p>	<p>第27條(基準) 學校圖書館의 職員, 施設 資料 및 기타 必要한 基準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新設)</p>	<p>第28條(補助)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學校圖書館 設置 및 運營에 必要한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補助金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27條(一般의 利用에의 提供) 學校圖書館은 그 目的達成에 支障이 없는 限 公衆의 利用에 提供할 수 있다.</p>	<p>第29條(現行法 第27條와 同一)</p>
<p>(新設)</p>	<p>第 6 章 特殊圖書館</p>
<p>(新設)</p>	<p>第30條(設置)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民法 및 기타 法律에 規定된 法人은 各各 法令 條例 또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圖書館을 둘 수 있다.</p>
<p>(新設)</p>	<p>第31條(機能) 特殊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活動을 통하여 設置 目的達成에 이바지한다.</p>
<p>(新設)</p>	<p>1. 設立目的에 必要한 資料의 蒐集, 整理, 保存 및 利用 2. 利用者들의 要求에 부응할 各種 資料를 蒐集하여 그 索引 및 抄錄의 作成 및 提供 3. 다른 圖書館과의 資料 및 文獻의 相互交流 4. 기타 設置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p>
<p>(新設)</p>	<p>第 7 章 圖書館協力網</p>
<p>(新設)</p>	<p>第32條(定義) 이 法에서 “圖書館協力網” 이라 함은 圖書館奉仕業務의 效率을 높이기 위한 全國 各種 圖書館의 相互 協力을 圖謀하는 組織體系를 말한다.</p>
<p>(新設)</p>	<p>第33條(機能) 圖書館協力網은 다음 各</p>

現 行	改 正 案
	<p>號의 機能을 통하여 圖書館 相互間의 奉仕 效率化에 寄與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分擔收書 制度의 實施 2. 相互貸借 制度의 實施 3. 參考業務網의 運營 4. 圖書館 業務處理 技術에 관한 指導 및 協力 5. 기타 奉仕業務 改善을 위하여 必要한 指導 및 協力
(新設)	<p>第34條(支援) 各種 圖書館의 設立者는 圖書館協力網을 통한 圖書館의 活動을 支援하여야 한다.</p>
(新設)	<p>第35條(中央館) 國立中央圖書館은 圖書館協力網의 “中央館”이 된다.</p>
(新設)	<p>第36條(中央館의 機能) 中央館은 다음 事項을 管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圖書館協力網의 各級 “代表館”의 指定 또는 變更 2. 圖書館協力網의 運營 및 統轄 3. 圖書館協力網의 指導, 援助 및 奉仕活動調整 4. 其他 必要한 事項
(新設)	<p>第37條(地域代表館) ① 特別市 直轄市 및 道에 1個館의 “地域代表館”을 둔다 ② 前項의 地域代表館은 그 地域圖書館에 대하여 協力網의 運營을 統轄한다.</p>
(新設)	<p>第38條(組織 및 運營) 圖書館協力網의 組織 및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 4 章 罰 則</p>	<p>第 8 章 罰 則</p>
<p>第28條(罰金) 第2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私立의 公共圖書館을 開設한 者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監督廳의 停館命令에 違反</p>	<p>第39條(罰金) 第14條 第3項, 第17條 및 第19條의 規定을 違反한 者는 2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現 行	改 正 案								
<p>한 者는 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p> <p>第29條(過怠料) 第12條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當해 刊行物의 定價의 5倍에 相當하는 金額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附 則</p> <p>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經過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p> <p>②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現存하는 圖書館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다만, 私立의 公共圖書館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2月以內에 監督廳에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p> <p>(新設)</p>	<p>第40條(過怠料) 第9條 第3項의 規定을 違反한 者는 當該 資料定價의 10倍에 相當하는 過怠料에 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附 則</p> <p>① (施行日) (現行法과 同一)</p> <p>② (經過措置) (現行法과 同一)</p> <p style="text-align: center;">附 則</p> <p>① 이 法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p>								
<p>(新設)</p>	<p style="text-align: center;">〈別表〉 圖書館 司書職員의 資格基準</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data-bbox="201 1006 347 1241"> <p>專門司書</p> </td> <td data-bbox="347 1006 992 1241"> <p>1. 正司書 資格者로서 碩士學位 以上의 學位를 取得한 者</p> <p>2. 學士學位 以上의 學位를 所持하고 正司書 資格證을 取得한 者로서 5年以上의 圖書館 實務經歷을 가지고 文敎部長官의 指定하는 教育機關에서 所定의 再教育을 받은 者</p> </td> </tr> <tr> <td data-bbox="201 1241 347 1466"> <p>正 司 書</p> </td> <td data-bbox="347 1241 992 1466"> <p>1. 大學의 圖書館學科를 卒業한 者</p> <p>2. 大學卒業者 또는 同等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로서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教育機關에서 圖書館學敎科目을 30學點以上 履修한 者</p> <p>3. 准司書로서 司書業務에 5年以上 從事한 經歷이 있는 者로서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教育機關에서 圖書館學敎科目을 30學點以上 履修한 者</p> <p>4. 大學에서 圖書館學 敎科目을 30學點以上 履修한 者</p> </td> </tr> <tr> <td data-bbox="201 1466 347 1545"> <p>准 司 書</p> </td> <td data-bbox="347 1466 992 1545"> <p>1. 專門 大學圖書館科를 卒業한 者</p> <p>2. 大學 또는 教育大學에서 圖書館學을 副專攻한 者</p> </td> </tr> <tr> <td data-bbox="201 1545 347 1590"> <p>司書敎師</p> </td> <td data-bbox="347 1545 992 1590"> <p>教育法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p> </td> </tr> </table>	<p>專門司書</p>	<p>1. 正司書 資格者로서 碩士學位 以上의 學位를 取得한 者</p> <p>2. 學士學位 以上의 學位를 所持하고 正司書 資格證을 取得한 者로서 5年以上의 圖書館 實務經歷을 가지고 文敎部長官의 指定하는 教育機關에서 所定의 再教育을 받은 者</p>	<p>正 司 書</p>	<p>1. 大學의 圖書館學科를 卒業한 者</p> <p>2. 大學卒業者 또는 同等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로서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教育機關에서 圖書館學敎科目을 30學點以上 履修한 者</p> <p>3. 准司書로서 司書業務에 5年以上 從事한 經歷이 있는 者로서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教育機關에서 圖書館學敎科目을 30學點以上 履修한 者</p> <p>4. 大學에서 圖書館學 敎科目을 30學點以上 履修한 者</p>	<p>准 司 書</p>	<p>1. 專門 大學圖書館科를 卒業한 者</p> <p>2. 大學 또는 教育大學에서 圖書館學을 副專攻한 者</p>	<p>司書敎師</p>	<p>教育法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p>
<p>專門司書</p>	<p>1. 正司書 資格者로서 碩士學位 以上의 學位를 取得한 者</p> <p>2. 學士學位 以上의 學位를 所持하고 正司書 資格證을 取得한 者로서 5年以上의 圖書館 實務經歷을 가지고 文敎部長官의 指定하는 教育機關에서 所定의 再教育을 받은 者</p>								
<p>正 司 書</p>	<p>1. 大學의 圖書館學科를 卒業한 者</p> <p>2. 大學卒業者 또는 同等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로서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教育機關에서 圖書館學敎科目을 30學點以上 履修한 者</p> <p>3. 准司書로서 司書業務에 5年以上 從事한 經歷이 있는 者로서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教育機關에서 圖書館學敎科目을 30學點以上 履修한 者</p> <p>4. 大學에서 圖書館學 敎科目을 30學點以上 履修한 者</p>								
<p>准 司 書</p>	<p>1. 專門 大學圖書館科를 卒業한 者</p> <p>2. 大學 또는 教育大學에서 圖書館學을 副專攻한 者</p>								
<p>司書敎師</p>	<p>教育法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p>								